

제 556 호
1976. 5. 27

발행인 : 서울특별시 구 자 훈
편집장 : 문화정보실장 조 용 하
전화 75-7834
인쇄 :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
전화 75-6090

시 보

차 례

○
◎ 조 례

- 제 1037 호 : 서울특별시지하철운입조례중 개정조례 3
- 제 1038 호 :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중개정조례 3
- 제 1039 호 : 서울특별시림부너부지관사용료징수조례중
개정조례 4

◎ 규 칙 :

- 제 1587 호 : 서울특별시지하철운입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... 4

◎ 고 시 :

- 제 118 호 : 도시계획시설 (방수설비) 신설결정및지적승인 ... 5
- 제 119 호 : 도시계획시설 (시장) 결정및지적승인 6

- 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- 2. 시보는 공문서요사와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조 **례**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
지하철운임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
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구자춘 **인**
1976년 5월 27일

◎서울특별시조례 제 1037 호

서울특별시지하철운임조례중개정조례
서울특별시 지하철운임조례중 다음과
같이 개정한다.

제 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제 9조 (회수승차권의 발매) ①일반회
수승차권은 11매를 1권으로 하

여 보통승차권 10매의 운임으로 한다.
②학생회수승차권은 11매를 1권으
로하여 제 1항의 운임의 30%를 할
인한 운임으로 한다.

부 칙

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농
수산물도매시장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
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구자춘 **인**
1976년 5월 27일

◎서울특별시조례 제 1038 호

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
조례중 개정조례
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중 다
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부 칙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

별표

도매시장의 명칭, 위치 및 면적

명 칭	위 치	면 적	
		대 지(㎡)	건 경(㎡)
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부분장	서울특별시관악구노량진동 13-8	26,035.8	18,885.4
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분장	서울특별시용산구한강로 3가 16-9	30,102.6	21,525.2
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동부분장	서울특별시동대문구용두동 39-48	16,500	7,345.5
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 축산부분장	서울특별시성동구마관동 766-8	14,416.2	6,876.2
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 축산부 영등포분장	서울특별시영등포구독산동 산 139	10,728.2	3,123.2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립부녀복지관 사용토징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

1976년 5월 27일

◎서울특별시조례제 1039 호

서울특별시립부녀복지관사용토
징수조례중 개정조례

서울특별시립부녀복지관사용토 징수조
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3 조 제 7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
한다.

- 7. 기술교도 수강료
- 가. 양재과 1월 1인 1,000 원
- 나. 원문과 1월 1인 1,000 원

부 칙

이 조례는 1976년 3월 1일부터 적용
한다.

규 칙

서울특별시 지하철운임조례 시행
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

1976년 5월 27일

◎서울특별시규칙제 1587 호

서울특별시지하철운임조례시행
규칙중 개정규칙

서울특별시지하철운임조례시행규칙중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3 조 제 7 호를 다음과 같이 신
설한다.

- 7. 학생이라함은 교육법제 81 조
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학
교 및 지정 학교의 재학중에
있는 자를 말한다.

제 8 조 제 3 호를 다음과 같이 한
다.

- 3. 회수승차권
- 가. 일반회수승차권
- 나. 학생회수승차권

제 19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 19 조 (통학정기승차권의 발매)

조례제 8 조 제 2 호의 규정에 의

한 통학정기승차권을 구입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교장이 발행한 학생증을 제시하여야 한다.

제 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 21조 (회수승차권의 발매) ①회수 승차권은 지하철선 구간내에서 승차 및 하차하는 여객에 대하여 이를 발매한다.

②학생회수승차권을 구입, 승차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교장이 발행한 학생증을 제시하여야 한다.

제 26조 제 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할인여객운임 : 제 2호외 정기 여객운임을 제외한 기타 할인에 의한 여객운임

제 48조를 삭제한다.

별지제 3호 서식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고 시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118 호

도시계획시설 (방수설비) 신설 결정 및 지적승인

1. 당시 관내 도시계획시설 (방수설비) 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조 및 제 13조의 규정과 건설부고시제 123호 (73.4.4) 권한위임사령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시 도시계획과와 관할 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

1976.5.27

서울특별시장

가. 방수설비결정조서

구분	시설명	폭원	연장	기	점	종	검	비	교
신설	방수설비	40m	1,250m	대치동	삼전동경계지역	개포동9			

(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)

<p>◎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119 호 도시계획시설 (시장) 결정 및 지적 승인</p> <p>1. 당시판내 도시계획시설 (시장) 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하 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제 13 조의 규정과 건설부 도시계획 123</p>		<p>호 (73.4.4) 의 권한위임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.</p> <p>2. 관계도서는 서울시 도시계획과 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 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에게 보이게 한다.</p> <p>1976.5.28 서울특별시 시장</p>	
<p>가. 시장 (백화점) 결정조서</p>			
시설명	위 치	면 적	비 고
시 장 (백화점)	백령로 2 가 277 일대	3,616 ㎡	본건물의 지하 1 층 에 한함
<p>별첨도면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</p>			